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02
------------	-----

2015년 12월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5. 11. 23. 김정태 의원외 12명 발의 (2015. 11. 26 회부)

2. 제안이유

- 공중전화는 시민들이 처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통신수단이며, 또한 개별 통신시설을 보유하기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기본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임.
- 그러나,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공중전화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공중전화시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공중전화와 부스 등 관련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노후시설의 현대화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시민들의 공중전화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로시설물인 공중전화 부스의 노후화로 가로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음.

- 따라서 시민의 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 부스에 홍보물 게재를 허용하여, 사회 안전망이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통신시설인 공중전화가 사회적 취약층의 통신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통화품질과 최소한의 시설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현대화된 부스의 설치를 유도하여 보도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각종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가 등장하고 있는 바, 이를 공공 시설물로 지정하여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며 보행권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광고물을 표시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3 조 및 제 17 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배경 및 취지

-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2015년 11월 23일 김정태 의원외 12명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공중전화의 수요 급감 및 공중전화 시설의 관리 소홀에 따라 관련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시설 현대화 등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공중전화 이용 불편 및 가로경관 훼손 등을 초래하고 있는 바,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통화품질 및 최소한의 시설 수를 확보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가 등장하고 있는 바, 이의 설치 유도를 통해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보행권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높이고자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로 지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략) 1. ~ 3. (생략) <div style="text-align: right;"><신 설></div>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5. ----- ----- ----- -----

□ 검토의견

- 공중전화부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의무¹⁾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 의무사업자”라 함)가 설치해야²⁾ 하나, 휴대폰 보급에 따른 공중전화 이용자의 급감³⁾과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익 감소로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공중전화는 공중전화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띤 시설로서,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는 바, 중앙부처(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공중전화 등을 보편적 의무로 규정해 이를 설치·관리하는 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의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⁴⁾을 보전하기 위해 보편적 의무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시켜 손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편적 의무사업자에게 보전해 주고 있음.⁵⁾

1) "보편적 의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의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를 말하며, 보편적 의무 중 하나가 공중전화서비스임(법 시행령 제2조). 공중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kt 자회사인 kt 링커스(Linkus)임.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편적 의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의무의 사업규모·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의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3) 최근 5년간 보도위의 공중전화부스는 312개소(12.2%) 감소함. 2014년 현재 보도위의 부스는 2,251개소(4,309실)임.

4) 손실은 그 의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에서 수입을 뺀 금액임.

- 따라서, 시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보편적 역무사업자의 손실에 그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시설 이용자의 감소 및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고 디자인이 향상된 현대화된 안심부스⁶⁾나 폴형 부스 등의 설치를 유도하여 시민 누구라도 필요시 필요한 장소에서 공중전화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편적 역무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광고를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공중전화부스 현황 <첨부자료: 사진> 참조)
- 서울시는 현재 인터넷, 공중전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고 비상시 안전지대로 기능할 수 있는 안심부스 등의 설치 장소를 기존의 공중전화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허용할 계획에 있어⁷⁾, 광고를 허용할 경우 복합용도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의 설치 장소는 광고수익과 kt 자체의 브랜드 광고효과를 올릴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같이 위험 및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의 설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보여짐.
-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은 필요하다고 보

5)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013년도 전국 보편적 역무 손실금 485억원 중 공중전화 관련 손실보전금은 164억원임.

6) kt링크커스는“안심부스”를 개발하여 북촌 한옥마을 풍문여고 앞에 설치하였음.

7) 서울시는 시장요청으로 공중전화부스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한 바 있음. 그 내용은 전기차 충전소 등 다른 기능으로의 전환, 보도 유효폭 미달지역 철거, 안전지대로 디자인 개선 추진, 사대문내 자전거 대여소 예정지역내 공중전화부스 적용 검토, 전통시장 주변 설치된 부스 활용 ATM 수요조사 등임.

여지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시설의 현대화와 다양화를 위한 방법이 과연 광고물의 부착 허용을 통한 방법외에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음. 서울시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공중전화서비스 외의 부가서비스의 추가 방법 및 자원 확보방안에 대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이는 시민의 세금부담과 관련 법령의 개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소관 부서(도시빛정책과)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시설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여러 시설물의 설치로 광고물이 난립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안심부스) 등이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로 정하여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검토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시대적 변화 추세를 반영하는 다양한 복합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안심부스의 설치에 따른 시민 편익 증진, 안심서비스의 확대보급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용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안심부스의 설치와 관리의무 및 비용부담의 주체, 금융기관과 복합편익설비를 갖춘 공중전화시설 설치자의 상업적 수익 창출 방법의 타당성,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 저해 및 광고물의 부착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 원치 않는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노출 등 다각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됨.

【참 고】 공중전화부스



기존 부스



종로형 부스(종로구청 요구)



신형 부스



폴형 부스



**안심부스(Safe-Phone)
〈공중전화 + 안전(Safe)〉**



**안심부스(Safe-Phone)
〈공중전화 + 안전(Safe) + ATM〉**